

민간경비원 배치신고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개선방안

Improvement on Site Inspection for Notifying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

정 지 덕* · 박 정 환** · 김 진 오*** · 김 건 희****

Jeong, Ji-Deok · Park, Jeong-Hwan · Kim, Jin-Oh · Kim, Kun-Hee

요 약

지도·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 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 증으로서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 민간경비, 배치신고, 지도·점검, 경비업법, 경찰

1. 서 론

현대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고, 개인은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권력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성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증가하는 범죄 및 시민의 안적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민간경비 서비스가 담당하여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생활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 민간경비산업의 양적인 성장은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경비시장은 영세업체의 난립과 경쟁업체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의 지도·감독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비업에 득 보다 실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어 민간경비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찰의 감독상 명령에

* 정희원 · 용인대학교 학점제(경호비서전공) 교수 hapki@hanmail.net

** 상지대학교 · 체육학부 교수 jhnjm@hanmail.net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elwla852@hanmail.net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rhantls@naver.com

따르지 않은 때는 행정처분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 3차 허가취소로 구분되고 있어 경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의 주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경비의뢰가 들어와도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불법으로 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요원 또는 인력파견의 형태로 경비원을 대체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간경비산업 형태를 음성적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원들의 비전문성을 야기 시켜 경비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배치신고에 있어 경찰의 지도·점검사항을 개선하여 고객 및 의뢰자(Client)로 하여금 다양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비원들이 효율적으로 경비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여 민간경비산업에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경비업법

경비업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위난을 예방하는 민간영역의 경비 활동과 그러한 업무의 실제적인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2.2 배치신고

경비업자는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신입 교육을 이수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3 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순회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현장 지도·점검시 개선방안

경찰의 경비업무 수행현장(이하 '현장'이라함) 지도·점검 시 민간경비 배치신고에 따른 원활한 지도점검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배치신고가 접수되면 사전에 경비업체 대표 및 경비지도사를 방문하게 하여 경호계획서 및 인력방안 운영을 검토 후 경찰의 협조사항과 안전요소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한 후 경비업무 수행에 관련한 감독사항에 대하여 세밀히 지시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담당 경찰관은 48시간 전 배치신고를 받은 경비원에 대한 조회(이수증 및 범죄이력 조회 등)를 철저히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현장 지도·감독 시 경비업

체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점을 지도하여 불법적인 폭력이나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 대다수의 현장에서 지도·점검 단속은 보편적으로 경찰관 1명이 진행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집단민원현장은 경비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경찰관 1명이 신속히 단속하기 곤란하며 경찰관의 현장 지도·점검 시 주관적인 지도·점검으로 민간경비업무 수행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 예로 단발적으로 100명 이상의 경비원을 투입하는 집단민원현장의 경우 동일복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경비업 시설 등의 기준에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20벌 이상)을 준비하여 허가를 허용)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경찰관에 주관에 따라 저촉시키고 있다.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경비원은 개인의 정장을 준비하여 현장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관마다 지도·점검 시 이를 용인하거나 위반행위로 보는 등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장에서 경비원이 입는 정장이라 함은 단정하고 비슷한 색상(검정, 곤색)을 착용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일선에선 주장하지만 지도·점검 담당 경찰관의 주관 또는 재량에 따라 다른 행정처분이 발생한다는 점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원 복장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도화 할 필요가 있겠다.

(3) 현장 지도·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점검 시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현장을 지도·점검하는 담당경찰관에겐 당연하면서도 꼭 필요한 업무이다. 하지만 지도에 대한 부분은 미비하며 형식적으로 사진 찍는데 그치는데 반해 점검 또는 단속을 하는 시간은 지도 시간에 수배의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는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경비 업체와 경비 서비스를 의뢰한 의뢰자(Client)에게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현장에 투입되어있는 경비원들을 한 장소에서 모이게 하고 있어 자기담당구역을 이탈하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 경비구역 안전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되어 의뢰인(Client), 경비업체, 경찰관 모두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 될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관내에 배치신고가 두 군데 이상일 경우 담당경찰관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형식적인 지도,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만 집중적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장 지도·점검에 필요한 담당 경찰관을 경비원수에 비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경비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현장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4)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

현재 지도·점검 시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의 조회와 신분증을 현장에서 대조하고 있다. 범 죄조회와 이수증의 조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는 현상이고, 경비원은 이미 배치신고 할 때 제출 했던 소지하기 불편한 크기의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을 지도·점검 시 소

지해야한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수증이 신분증 화 될 수 있도록 규격을 동일 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에 성명, 이수번호, 사진,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을 표기하고 기존의 크기에서 신분증크기에 맞춰 소지하기 편하도록 하면 지도·점검 시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만 확인하면 되므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절차도 간편화 될 것이다.

4. 결론

「경비업법」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지도·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한계를 보완하는 치안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상호협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민간경비업체 또한 지나친 영리추구 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단 민간경비의 현실성을 이해하고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민간 경비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반자의 자세가 필요 할 것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경찰의 지도 점검에 일부 경비업체는 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경찰은 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경비업체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의 지원요청도 받고 폭력 또는 기타 불법적인 행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경찰에 배치신고를 하고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데, 경찰은 민간경비업체를 단속대상으로 보기에 안타까움이 있어 민간경비 배치신고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법제처 (2016).

경찰백서 (2015).

사이버경찰청 (2016).

우제태 (2007)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경찰연구 논집, 제2호, pp.133 ~167.

이창무 (2006) 민간경비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pp.349 ~376.

최석오 (2012) 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8, pp.99 ~117.